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71 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배준영·강선영·김형동

고동진 · 김소희 · 박준태

김종양ㆍ정성국ㆍ임이자

김위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(內國人用) 카지노·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,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·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.

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·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- 가.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·설치하는 광고
- 나.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·안내 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
- 다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 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·설 치하는 광고물등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누구든지	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	
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	3
법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	
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	
고물등. <u>다만</u> , 사행산업통합감	<u>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</u>
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•설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
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	<u>외한다.</u>
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	
위치를 표시 · 안내하기 위하	
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	
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	
<u>다.</u>	
<u> </u>	가.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
	에서 직접 표시 • 설치하는
	광고
<신 설>	<u>○─</u> 나.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
<u> ^ 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
	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
	표시 • 안내하기 위하여 영
	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

<신 설>	<u>치하는 광고물등</u> 다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
	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
	지노사업자가 같은 법 제3
	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
	<u>노업에 대해 표시·설치하</u>
	는 광고물등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